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66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5. 3. 21.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제안이유

달성군청 정구부 해체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실효에 맞게
현행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구선수단 문구를 삭제함(안 제2조)
- 나.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변경함(안 제5조제3항제1호)
- 다. 대구광역시달성군청정구부관리운영지침 문구를 삭제함(안 제14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(※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5. 2. 20. ~ 3. 12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구선수단 및 휠체어테니스단”을 “휠체어테니스단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에 해당하는 자를”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제4호 중 “기타 단장이 부의하는”을 “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재적의원”을 “재적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제7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중전의 제1항) 중 “「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”를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 중 “범위내”를 각각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시행규칙)”을 “(시행규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, “대구광역시달성군청정구부관리운영지침 및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관리운영지침에 의한다.”을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관리·운영 지침」에 정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따</u> <u>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조(설치목적)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<u>정구선수단</u> 및 <u>휠체어테니스단</u>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따로 정한다.</p> | <p>제2조(설치목적) ----- ----- <u>휠체어테니</u> <u>스단</u>----- -----.</p> |
| <p>제5조(운영위원회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<u>1에</u>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달성군 문화관광국장, <u>기획예산실장</u>, 체육진흥과장</p> | <p>제5조(운영위원회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 <u>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는 사람 <u>중에서</u> -----.</p> <p>1. -----, <u>기획예산과장</u>, -----</p> |

| | |
|---|---|
| <p>2. (생략)</p> <p>④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|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|
|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</u></p> <p>⑤ 운영위원회는 <u>재적의원 3분의 2</u>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|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</u> -----</p> <p>⑤ ----- <u>재적위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⑥ (생략)</p> <p>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</p> |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 중요한 사항</u></p> <p>제8조(해임)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.</p> |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제8조(해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| | |
|---|---|
| 1. ~ 10. (생략) | 1. ~ 10. (현행과 같음) |
| 11. <u>기타</u>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| 11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|
| 제10조(복무 및 훈련) ① <u>단원의</u>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「 <u>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</u> 」를 준용한다. | 제10조(복무 및 훈련) <u>단원의</u> ---- ----- ----- 「 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</u> 」-----. |
| 제11조(보수 등의 지급) 단원에게는 예산의 <u>범위안</u> 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| 제11조(보수 등의 지급)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. |
| 제12조(합숙소 운영) 단원의 기량 향상과 경기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<u>범위내</u> 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숙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 | 제12조(합숙소 운영)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. |
| 제13조(차량구입 운영) 단원의 훈련 및 대회참가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의 <u>범위내</u> 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을 구입 | 제13조(차량구입 운영)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|

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
달성군청정구부관리운영지침
및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
니스단관리운영지침에 의한다.

-----.

제14조(시행규정) ----- 시행에
----- 「대구광역시
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관리·운
영 지침」에 정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·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④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도·감독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9조(복지 연구 등의 진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